<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14 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2021385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10-2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10-06

비스트로 W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위너스에프앤디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동남로 124, 2층(문정동, 문정빌딩)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1811-8058

E-mail: winusfnd@naver.com

Homepage:-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비스트로 W 등 14 서울 송파구 동남로 124, 2 층(문정등					2 층(문정동,	문정빌딩)		
주식회사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위너스에프앤디	2019.10.22.		2019.11.12.	이호성, 양	철환	1811-8058	02-3012-4848	
	법인등록번호	110	111-7267043	사업자등록번호		817-	817-88-01439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호성/		서울 송파구 동남로 124, 2 층(문정동, 문정빌				
사용인 (임원)	수식회사	비스트로 W 등 14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ㅁ편)	위너스에프앤디		이호성, 양철환	1811-8058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양철환/	양철환/ 주식회사 14		남로 124, 2 층(문	정동, 문정빌딩)		
사용인 (임원)	주식회사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ロゼ)	위너스에프앤디	14	이호성, 양철환	1811-8058	-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비스트로 W	-
상 호	비스트로 W OO 점	-
상표(서비스표)	_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590,302	313,386	276,916	1,586,249	5,461	18,026
2022 년	871,677	390,212	481,465	2,277,911	106,712	204,549
<mark>2023 년</mark>	<mark>1,845,691</mark>	<mark>566,439</mark>	<mark>1,279,252</mark>	<mark>4,490,179</mark>	<mark>774,574</mark>	<mark>797,786</mark>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ΛIZ	취 지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이호성	공동대표이사	2019.10.22. ~ 현재	공동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관련 임원	양철환	공동대표이사	2020.04.14. ~ 현재	공동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급	상근	비상근	극전 ㅜ (당)
<mark>2023 년 12 월 31 일</mark>	<mark>2</mark>	<mark>0</mark>	<mark>22</mark>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2019.11.~현재	1970 새마을포차(등록번호:20191113) 영업표지의 뉴트로감성주점업 경영												
															2022.09.~현재	일일수작(등록번호:20213850) 영업표지의 포차 컨셉 주점업 경영
			2021.10.~현재	서귀포로맨스(등록번호:20211581) 영업표지의 제주도 컨셉 주점업 경영												
			2023.09.~현재 영업표지의 맥주전문주 강남최부자집(등록번호:	생생호프(등록번호:20201668) 영업표지의 맥주전문주점업 경영												
				강남최부자집(등록번호:20201669) 영업표지의 한식주점업 경영												
		가맹사업 기 경영	2021.02.~현재	혼닭떡볶이(등록번호:20210723) 영업표지의 치킨 및 떡볶이전문점 경영												
7나매 부 ㅂ	(주)위너스에프앤디				가맹사업 예정	따봉찜닭(등록번호:20210494) 영업표지의 찜닭전문점 경영										
打ち亡士	(구)귀디드에프앤디				경영	경영	경영	경영	경영	경영	경영	경영	경영	가맹사업 예정	잇지커피(등록번호:20213864) 영업표지의 커피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육즈비삼겹(등록번호:20213863) 영업표지의 삼겹살 전문점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비스트로 W(등록번호:20213855) 영업표지의 서양식업 경영												
					숨(등록번호:20213856) 영업표지의 이지카야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염왕치킨(등록번호:20213858) 영업표지의 치킨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위드꼬치(등록번호:20213859) 영업표지의 꼬치구이 주점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오이시덴(등록번호:20213852) 영업표지의 한식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해당없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예정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이호성,	가맹사업 예정	서울 송파구 동남로 124,
위너스에프앤디	양철화		2 층(문정동, 문정빌딩)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	종
8 합표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비스트로 W	서양식	파스타, 코던블루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TICH		2021.12.31			2022.12.31	l.		<mark>2023.12.31</mark>	<mark>I.</mark>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근 3년 간 가맹점이 없습니다.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년						
2022 년						
<mark>2023 년</mark>						

최근 3년 간 가맹점이 없습니다.

6. 최근 3 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가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연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의 수
下正	영오/이름	등록번호		<u> </u>	2021.12.31.	2022.12.31.	2023.12.31.
		1970 새마을포차	20191113	외식업	31/0	20/0	5/0
		일일수작	20213850	외식업	0/0	5/0	<mark>60/0</mark>
		서귀포로맨스	20211581	외식업	11/0	29/0	<mark>18/0</mark>
		생생호프	20201668	외식업	0/0	0/0	<mark>5/0</mark>
		강남최부자집	20201669	외식업	5/0	0/0	0/0
		혼닭떡볶이	20210723	외식업	16/0	0/0	0/0
가매 보 ㅂ	(주)위너스에프앤디	따봉찜닭	20210494	외식업	0/0	0/0	0/0
7000	(구)귀디프에르 밴디	잇지커피	20213864	외식업	0/0	0/0	0/0
		육즈비삼겹	20213863	외식업	0/0	0/0	0/0
		비스트로 W	20213855	외식업	업 0/0 0/0	0/0	0/0
		숨	20213856	외식업	0/0	0/0	0/0
		염왕치킨	20213858	외식업	0/0	0/0	0/0
		위드꼬치	20213859	외식업	0/0	0/0	0/0
		오이시덴	20213852	외식업	0/0	0/0	0/0

7.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그 산정기준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 년 말	연간평균	균매출액	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비고
МП	가맹점 수	평균	면적 3.3 m²당	상한	면적 3.3 m²당	하한	면적 3.3 m²당	-,-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근 3년 간 가맹점이 없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비스트로 W]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년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 년에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78	7176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	가세 미포함)	비고
구분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미끄
<mark>광고·판촉</mark>	비공개	<mark>287,047</mark>	<mark>287,047</mark>	-	-

상기 광고판촉 지출 내역은 당사가 당 가맹사업 외에 사용한 광고판촉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해당없음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와 계약하는 가맹점사업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사의 프랜차이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사이버종각대리점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연락처 : 02-735-3385
		팩 스 : 070-7827-3785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위너스에프앤디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가맹점사업자	
지급받는 자)	기정검사법사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모임기신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보험금의 수령절차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 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비(가입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 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가입비)	11,000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기간 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비를 잔여 계약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환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교육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오픈마케팅비	2,200			
총계	18,7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등
총계	3,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오픈마케팅비	2,200
계약이행 보증금	3,000
 합계	21,7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금	·액				
구분	지급대상	99 m ^² 기준 (30 평)	3.3 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설비/집기	협력업체	16,500	-				
간판/사인	협력업체	5,500	-		발주 또는 시공 전 계약취소	매장	
인테리어	협력업체	56,100	1,870	계약체결과 동시			상황에 따라 변동
의탁자	가맹본부	4,400					
초도물품	협력업체	2,200	-				
홍보판촉물	가맹본부	2,750					
총계		87,450	2,915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비용 외 점포 상황에 따라 내부철거, 닥트, 전면윈도우 및 창호신설, 전기승압 및 간선, 화장실, 냉/난방, 도시가스, 소방, 디스플레이비품, 대형건물등의 특수요구사항, 테라스 및 외부 파사드, 의탁자 등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에 대한 대가로 3.3 m² 당 330 천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또는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가맹점사업자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단위: 선	원, 무가세 포암)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 월 매출액의 2.2%	매월 가맹본부 지정일	반환없음		
POS 임차료	협력업체	월 33 천원	매월 가맹본부 지정일	반환없음		POS 1 대 기준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	-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훈련실비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III.1. 교육훈련 참조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통지 후 7일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광고및판촉활동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15]%	지급기일 익일부터	반환없음	

²⁾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 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는 2023 년에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이 없으므로 차액가맹금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당사는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모든 공작물, 건물내외장식, 블로그 포스팅, 키워드광고, 인터넷상의 모든 홍보 안내자료 등 일체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가맹점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없음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 H - 8 작년을 단배하여야 하며 그 시세인	48C 404 E04-	1.
상품명	권장판매가격(원)	비고
_ 비프 코던블루	15,000	
포크 코던블루	12,000	
함박스테이크	12,000	
돈까스	8,000	
토마토 스파게티	6,000	
치즈시내소	6,000	이쪼에 기계되 이이이
소프트타코	5,500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슬라비죠	4,000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수제햄버거	3,500	위반시 아래의 절차를 따름
치즈버거	4,000	1회 위반: 구두 경고
감자튀김	2,000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불고기라이스	8,000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돼지불고기라이스	8,000	3외 이상 치진, 계급 에시
특 홈라이스	7,000	
새우 홈라이스	7,000	
김치 홈라이스	6,000	
음료	1,500	
맥주	4,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 3 자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원·부재료 및 1)의 판매제한 상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2 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은 상기 '1)'의 표와 같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친 어조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서양식 전문점	비스트로 W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① 점포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네이버지도-길이재기 기준) **500m** 를 원칙으로 함

②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m² 이상의 집합건물)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함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상권의거주인구또는유동인구가현저히변동되는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소성사유말생→ 당사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년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년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예→B, 아니오→A	①+15 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 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36조 1항

-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37조 1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교육비, 가맹비(가입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위치변경을 한 경우
- 7.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개량·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설비 및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1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37조 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필요시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가맹본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지정한 범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가맹본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비스트로 W]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파스타 등 비스트로 W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취급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가맹본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4:00	연중무휴 원칙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0 시 또는 오전 1 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 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상권에 따라 상이	직접 근무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8	그브 과고 서겨		비율	ㅂ다 저士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가맹점 모집광고	100%	-	
전국 및	브랜드 광고			
지역단위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 브랜드 광고	50%	50%	광고판촉 계획 공고 및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 동의(광고 50%, 판촉 70%) → 광고·판촉비 납입 → 광고·판촉 시행
전국 및 지역단위 판촉				0 2 1 10
가맹점 자	체 광고·판촉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브랜드 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담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 24조 (광고)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나 판촉의 내용과 문안, 기타 시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계약조문 제 25 조 (판촉)

④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나 판촉의 내용과 문안, 기타 시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 39조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정보(경영노하우, 영업규정, 매뉴얼, 교육자료, 거래처 정보,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정보)을 본 가맹점 운영을 위한 목적 외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교육받은 내용과 관련 자료 들은 가맹본부의 핵심 경영노하우로서 영업비밀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하고, 인쇄 또는 복사, 대여, 제공, 공개할 수 없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정보를 법령의 허용범위에서 사용하여야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고, 가맹계약 종료 후 1 년 동안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자신 또는 제 3 자의 명의(주주로 참여하는 것 포함)로 이 사건 계약상 영업지역 내 당 가맹사업의 영업과 주메뉴 구성이 겹치는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41조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 3 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 일이내의 경우 위약금 <u>금 삼백만원</u>, 그 이후의 경우 <u>금 오백만원</u>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금액 중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 3 항의 위약금 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 20 조 제 3 항(산출자료 미제공), 제 21 조 제 4 항(출입 및 자료제출), 제 30 조 제 4 항(영업표준화), 제 26 조 제 1 항(자점매입), 제 32 조(보고의무), 제 37 조 제 1 항 제 8 호(임의 영업중단)을 각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 당 위약벌 **금 일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 38 조 제 1 항(계약의 종료와 조치)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지체 일(日) 당 <u>금</u>삼십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제 39조 제 1 항(비밀유지 의무)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금 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가맹점사업자가 제 39 조 제 3 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한 경우 계약기간 존속 중의 경우 위약벌 **금** 오천만원,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인 경우 위약벌 **금 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동일한 업으로 사용할 자에게 가맹점 매장을 양도(권리시설양수도)하는 경우 **금 이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⑩ 가맹본부는 제 6 항 내지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12조 제 1 항 제 5 호의취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위반의 기간, 정도, 범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1/2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제한할 수 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 개월 전 가맹본부에게 사전 통지한 뒤 합의 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종료에 합의가 되었으나 별도의 합의기준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또한 같다.

잔여 가맹계약 월 수 X 직전 12 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 단,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운영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10일 이상 운영하지 않은 월은 제외한다.
- ① 가맹본부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나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할인·면제·무상지원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	----	------	------

합계		점포사정에 따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상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즉시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정보공개서 제공		
보여 서면 . 사다	- 가맹계약서 제공	계약체결 14 일	
사업 설명·상담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전	
	-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개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 당일	
실내외 공사착수	- 자체 공사	3 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10 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2 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 42 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비용항목	o 간판교체 비용 o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 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	---------	-----	------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최초교육	5 일	5,500 (1 인 기준)	-
개점 후 교육	교육필요시 실시	경우에 따라 실비부담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37 조 (계약의 해지)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제 36 조 (계약의 갱신과
경우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메 1 4 ㅈ /게시 스이\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 14 또 (개시 등원)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당사는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팀(02-6420-814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연락처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스런하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 명 했습니다." 라고 작성해주	
수령확인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지	치단체	내	가장	인근에	영업중인	가맹점	목록
					<광(역지방자:	치단체 :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ㄷ	· 전보	□ 저남 ┌	고경보 ┌	1 경남 ┌	제주

순번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